

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

중대재해
사이렌

**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
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
(예: 보험, 상품서비스 등)을 하는 피해사례 다수 발생**

사례 1)

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하였거나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산안법이 개정되어 **사업장마다 보수교육 1시간을 이수**하여야 하며, **해당 지사 직원이 방문**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

사례 2)

'24년에 적용되는 중대법 관련 추가 업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**계도 대상에 선정**되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며, 꼭 **해당 기관에서 교육**을 받아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안내

반드시 확인

-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,
-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

①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

-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접속
- 하단 팝업존 “**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**” 클릭
-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입력 후 결과 확인

②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여부 확인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접속
-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공표목록
- “**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**” 확인

*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
반드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


고용노동부